

# 정 관

1996. 3. 4. 제정.  
1997. 10. 20. 개정.  
1998. 12. 31. 개정.  
1999. 4. 29. 개정.  
2002. 7. 9. 개정.  
2003. 3. 7. 개정.  
2012. 2. 18. 개정.  
2012. 4. 30. 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스포츠 저변의 확대와 한국의 모터 스포츠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동차 경기를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확충하며 국내선수 및 관계인 교육, 양성, 육성 및 전문화를 통하여 자동차 경기가 국민대중 스포츠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으로 국내선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위를 선양함으로써 건전한 국민대중 스포츠로서 자동차 경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社團法人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이하 “이 법인” 이라 한다)라 칭하고 외국에는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약칭 KARA)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20층에 둔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국내, 국제 자동차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여.
2. 자동차 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비 및 기술개발.
3. 자동차 경기를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공간 확충 및 공인캠페인 주최.
4. 자동차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5. 자동차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6. 자동차 경기의 기본 방침 심의 및 결정.
7. 자동차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8. 자동차 경기를 위한 경기인, 심판, 운영요원 등의 교육, 양성, 지원 및 기금마련.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항.

####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2장 회 원

#### 제6조 (회원자격)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원,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라 함은 일반회원을 제외한 본회원, 정회원만을 의미한다.
- ② 본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년자로 한다.
  1. 이 법인에서 발급하는 A등급 라이선스를 보유한 드라이버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가) 당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이 법인이 공인한 자동차 경기에 5회 이상 출전 하여 기록을 공인 받은 자.
  2. 이 법인에서 발급하는 B1등급 이상의 라이선스를 보유했던 오피셜 중 다음 조건 을 충족하는 자
    - 가) 자동차 경기 진행과 관련한 다음 분류의 인원 중 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A2 등급 이상의 라이선스가 부여된 자 중 전년도에 이 법인이 공인한 자동 차 경기에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는 자
      - 경기심사위원
      - 경기위원장
      - 레이스디렉터
      - 기록위원
      - 기술, 검차위원
      - 피트(폐독) 위원
      - 트랙(코스) 위원
      - 사실심판원

### - 경기사무국장

3. 당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이 법인이 공인한 자동차 경기에 출전했던 이 법인의 공인, 등록을 거친 팀의 구성원 중 연속 3년 이상 정회원으로 등록한 자. 단, 본 호의 회원은 팀 당 5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③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본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 ④ 일반회원은 이 법인이 공인하거나 주최한 자동차 경기 및 각종 행사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이 법인의 홈페이지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⑤ 본 조의 각 회원자격은 1년으로 하며, 이 법인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한다.
- ⑥ 본 조의 회비, 라이선스 발급기준, 대상자, 가입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회에서 정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본회원은 각종 회의에 있어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권한은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행사 할 수 있으며, 위임이나 서면제출 없이 각종 회의에 불참석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서 권한 일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② 회원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이 법인의 무료 또는 유료 등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③ 회원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회원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④ 회원(일반회원은 제외한다)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 1인

2. 회장 : 1인
3. 부회장 : 2인
4. 전무이사 : 1인
5. 이사 : 11인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6. 감사 : 2인

####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 임기는 그 반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⑤ 선출된 임원은 법인등기부에 등재한다.

####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자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상근, 비상근 직위에 대한 위촉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13조 (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 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전술하는 일

### 제15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 제16조 (임원의 보수)

- ①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근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 (자문위원회)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모터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4장 총회



### 제18조 (구성)

총회는 제6조의 회원 중 본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합병,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의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
- ② 총회에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사항

### 제20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본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본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본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본회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본회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가 없을 때에는 출석 본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본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4조 (회의록의 작성 등)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본회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 참석 회원 명부와 함께 협회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9.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가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회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퇴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30조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대리)

- ① 이사회 의결사항 중 구성원 각자의 책임에 관련된 사항 등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 등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전 항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 등은 제26조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31조 (회의록의 작성 등)

회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협회에 비치, 보관한다.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32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제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④ 기본재산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 (재산의 관리)

-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철차를 밟아야 한다.

#### 제34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35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단, 이때 조달된 경비 중 기부금에 관하여는 이 법인의 홈페이지([www.kara.or.kr](http://www.kara.or.kr))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 제36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④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8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 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41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제7장 사무국

#### 제42조 (사무국의 설치)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8장 보칙

#### 제43조 (법인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 본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 제44조 (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총 본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자동차경기를 주최하거나 주관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운전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사항.



#### 제47조 (민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